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3

March 31, 2022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3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u>공정위, 하도급분야 기술 유행행위 익명제보센터 운 영 개시</u> 3. 3.	• (이슈) 하도급분야 기술유행행위 감시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2. 3. 3.부터 하도급 분야 기술유행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힘
<u>공정위, 경쟁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u> 3. 4.	• (이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금년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함
<u>공정위, 물류·IT 서비스 공 시 도입 관련 해명</u> 3. 16.	• (이슈) 물류·IT 서비스 공시 도입 • (주요내용) (i) 물류·IT 서비스 공시 도입에 있어 기업집단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ii) 71개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2,612개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iii) 매출회사와 매입회사가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이 되는 물류·IT서비스인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iv) 매출회사와 매입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공시 정보의 정합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이슈	주요 내용
<u>공정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규제 관련 해명</u> 3. 18.	• (이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규제 • (주요내용)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지자 현행법으로 특정 사업자를 제재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u>공정위, 인수합병 심사 시 수수료 부과 방안 추진 관련 해명</u> 3. 21.	• (이슈) 인수합병 심사 시 수수료 부과 방안 • (주요내용) 공정위가 올해 기업결합 신고 기업에 심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u>공정위,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발표</u> 3. 22.	• (이슈)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함
II. 주요 소식	
<u>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 개선 방안 연구 영역 발주</u> 3. 1.	• (이슈)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 개선방안 • (주요내용) 공정위는 거래 규모를 반영한 안전지대 기준 신설 등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 영역을 발주함
<u>공정위, 상조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등 개선 방안 연구 영역 착수</u> 3. 3.	• (이슈) 상조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등 개선방안 연구 영역 착수 • (주요내용)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상조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영역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u>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u> 3. 8.	• (이슈)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동향 • (주요내용)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u>방통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u> 3. 10.	• (이슈)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 (주요내용)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의결하고 2022. 3. 15.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u>윤석열 당선인,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공약</u> 3. 10.	• (이슈) 새 정부에서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 • (주요내용)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위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하지는 않음

이슈	주요 내용
<u>‘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면 재검토 예상</u> 3. 17.	• (이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주요내용) 윤석열 당선인이 플랫폼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ICT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예상됨
<u>공정위, 인수위 보고(플랫폼 자율 규제 및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u> 3. 24.	• (이슈) 공정위의 인수위 업무보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플랫폼 정책을 자율규제로 선회하고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인수위에 보고
<u>EU, 디지털시장법 잠정 합의</u> 3. 24.	• (이슈) EU 디지털시장법 잠정 합의 • (주요내용) EU 집행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에 잠정 합의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3)

I. 보도자료

1. 공정위, 하도급분야 기술유행행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개시 (3. 3.)

- 공정위는 2022. 3. 3.부터 하도급 분야 기술유행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
- ‘기술유행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시에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동일하게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으며, 공정위는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을 밝힘
- 아울러 공정위는 ‘기술유행 익명제보센터’의 설치로 중소기업의 기술유행 제보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은 스스로 기술유행행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2. 공정위, 경쟁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 (3. 4.)

- 공정위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금년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함
* 2021년에는 171개 선정하여 149개 개선 완료
- 개선과제 총 196건 중 광역자치단체 조례·규칙은 24건(12.2%),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은 172건(87.8%)이며, 개선과제를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67건(34.1%), 사업자차별 8건(4.1%), 사업활동제한 75건(38.3%), 소비자이익저해 46건(23.5%)임
 - (선정기준) 상대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높고, 되도록 지자체별로 동일·유사한 조례·규칙을 선정
-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 개선이 (i) 다른 지자체 지역으로의 시장진입과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쟁촉진과, (ii) 그로 인한 상품가격의 인하 등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공정위는 개선과제 중 공정거래법령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거나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에 대하여는 개선의 노력과 더불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로 그로 인한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3. 공정위, 물류·IT 서비스 공시 도입 관련 해명 (3. 16.)

- (언론 보도) 한 언론은 지난 3월 15일, (i) 물류·IT 서비스 공시 도입에 있어 기업집단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ii) 71개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2,612개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iii) 매출회사와 매입회사가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이 되는 물류·IT서비스인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iv) 매출회사와 매입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공시 정보의 정합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함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i) 지난해 사전 의견수렴(1회) 및 행정예고(2회)를 통해 물류·IT 서비스 공시 도입에 대한 기업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근거 규정 및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ii) 기업집단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는 회사로 한정하여 공시 의무를 부과하였고, (iii) 물류·IT서비스 거래인지 여부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며, (iv) 매출회사와 매입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 각 공시주체의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

*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 원)

4. 공정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규제 관련 해명 (3. 18.)

- **(언론 보도)** 한 언론은 지난 3월 18일, 공정위가 2021년 3월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부진하자 국회 통과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플랫폼 기업에 현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전인 2020년 6월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 현행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직권조사 대상인 4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해명함

5. 공정위, 인수합병 심사 시 수수료 부과 방안 추진 관련 해명 (3. 21.)

- **(언론 보도)** 한 언론은 지난 3월 20일,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기업에 심사 수수료를 부과하고, 기업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를 인력 채용, 분석 업무 보강 등 심사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여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고 보도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현재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

6. 공정위,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발표 (3. 22.)

-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
- **(현황)** 2021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7,342개, 브랜드는 11,218개, 가맹점은 270,152개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그 중 브랜드 수는 전년대비 4,124개(5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2021년 가맹사업 현황을 종합하면 법 개정의 영향에 따라 신규, 소규모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급증하였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맹점 운영의 어려움이 나타남
 -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가맹점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을 돕기 위하여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상생협력 촉진,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등의 정책을 추진함
 - 향후에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신규 브랜드 증가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법 위반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II. 주요 소식

1.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착수 (3. 1.)

- 공정위는 거래 규모를 반영한 안전지대 기준 신설 등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발주
 -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전에 기업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있음
 - 공정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i) 부당내부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의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ii)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거래 총액 기준 안전지대 도입시 합리적인 수준에 대하여 검토하며, (iii) 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부당성 관련 안전지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임
 -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반영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함

2. 공정위, 상조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등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착수 (3. 3.)

-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상조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 파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보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배구조 혼란 등으로 파산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공정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개사의 운영 구조와 공제료 부과 기준 등을 분석해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짐

3.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3. 8.)

- 방통위는 지난 3월 8일 개최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소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힘
- 개정 시행령은 지난 2021. 12. 1.부터 2022. 1. 10. 사이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앱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함 (안 제42조 제1항, [별표 4] 개정)
 -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방법, 인앱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 마련 (안 제30조의9 신설)
 -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법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앱마켓 매출액,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이용현황 등 조사 대상과 내용을 마련하고, 기존 실태조사를 준용하여 조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안 제30조의10 신설)
 -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

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46조 제1항, [별표6] 개정)

4. 방통위,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 (3. 10.)

-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의결하고 2022. 3. 15.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3조~제5조)
 -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의 세부기준 마련 (안 제6조~제7조)

5. 윤석열 당선인,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공약 (3. 10.)

-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위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공약하였으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하지는 않음
 - 경총·전경련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
 - 반면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위 권한의 요체라고 보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6.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면 재검토 예상 (3. 17.)

-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이 플랫폼 업계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플랫폼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ICT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예상됨
-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것을 지양하고, 플랫폼 자율 규제 기구와 분쟁 조정위를 만들어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
 - 주요 플랫폼 업체,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순수 민간 또는 민관 공동 형태의 논의 기구로서 플랫폼 자율 규제 기구를 구성하고,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7. 공정위, 인수위 보고(플랫폼 자율 규제 및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3. 24.)

- 공정위는 지난 3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공약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발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플랫폼 규제 정책 관련)**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 및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소개함. 특히 규제 완화를 위해 법 적용 요건 상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 공정위는 인수위와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i) 특수관계인 관련 자료 제출 범위 축소, (ii)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활용 촉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기타)** 공정위는 (i)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계약실패 조사,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ADR 활성화 등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고, (ii)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윤 당선인은 기업 소송관리 리스크를 고려하여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 대신 엄정하고 객관적인 고발권 행사 및 의무고발요청제도 강화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8. EU, 디지털시장법 잠정 합의 (3. 24.)

- EU 의회,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하여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도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용 대상 사업자)** 대상 기업은 시가총액 750억유로 또는 유럽 내 매출 75억유로 이상인 대형 플랫폼으로 규정
- **(디지털 시장법 주요 내용)**
 - (i) 타깃 광고 등에 사용되는 IT 기업의 개인 데이터 결합 제한 (ii) 인앱결제 강제 금지 (iii) 대형 메신저 사용자가 경쟁 업체의 사용자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게 한 제한 철폐
 - 규정 위반시 (i) 1차적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10% (ii) 반복적 위반시 최대 20%의 벌금 부과 가능 (iii) 조직적 위반행위시 기업 인수 제한 등 조치 부과 가능
- **(도입 시기)** 각 기구의 최종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III. 국회 발의법안

- 2022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국회의 제·개정안 발의 사항이 없음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